

제265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2007년 11월 7일 (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1. 7.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0.1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심사보류 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 6)상정,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1. 제안이유

- 가. 민선이후 공공부문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 나.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 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재직자, 그 밖에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함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정지원(안 제12조, 제13조)

- 갈등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간, 자치단체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특히 각종 국책사업 공모 등을 둘러싼 공공부분의 갈등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음.

우리도의 경우에도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군 교육기관 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 공모를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을 겪은 바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부문의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 요지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 11. 6(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장

2. 수정이유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갈등예방과 조정을 위해 자료 및 의견제출을 이해관계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수정주요내용

-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안 제5조 제2항)

- 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책관리실장 ⇒ 위원중에서 호선함.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정책관리실장 추가함.(안 제5조 제3항)

- 이해관계자에게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항)

- 관계기관·단체 ⇒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 11. 6 .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이유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갈등예방과 조정을 위해 자료 및 의견제출을 이해관계자에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함.

수정주요내용

-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안 제5조 제2항)
 - 위원회 부위원장을 정책관리실장 ⇒ 위원중에서 호선함.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정책관리실장을 추가함.(안 제5조 제3항)
- 이해관계자에게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항)
 - 관계기관·단체 ⇒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후단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중 “관계기관·단체”를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 5조(구성) ①위원회는----- -----.</p> <p>②-----, 부위원장은 <u>정책관리실장으로 한다.</u></p> <p>③----- <u>자치행정국장</u> ----- -----.</p>	<p>제 5조(구성) ①위원회는----- -----.</p> <p>②-----, 부위원장은 <u>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u>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u>-- -----.</p>
<p>제 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 -----<u>관계기관·단체</u>----- ----- --.</p>	<p>제 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 -----<u>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u> ----- --.</p>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도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 시·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규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자문·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1995.7.1, 1999.12.31, 2005.4.27>